



농림축산식품부



한국장학재단

농어촌학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!



농림축산식품부



한국장학재단



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

농어업인 분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내고,
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
등록금 전액을 **무이자**로 용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

신청 대상

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**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** 또는 **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학부생**

- 1순위**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
농어업인 대학생(본인자격 신청 시)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, 다자녀가정
- 2순위**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
(6개월(180일)이상 거주, 농어업 미종사)
- 3순위** 특별 추천자



신청 자격

- >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**70점 이상**
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)
- > 직전학기 **12학점 이상** 이수
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)



신청 시 유의사항

- >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, **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**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
- > 대학원 및 학점은행체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>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**학교에 특별추천 문의**



신청 방법

학기 별 신청기간에 **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** 접속 후 신청
※ 문의 및 안내 한국장학재단 **1599-2000**



농어촌학자금 용자사업 제도개선

지원대상 변경

현행

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
(6개월(180일)이상 거주, 농어업 미종사) ※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

변경

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하여는
소득 8분위 까지만 지원
※ **농어업종사자 자녀(1순위) 및 특별추천자(3순위) 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원**

★ 2016년 1학기 농어촌 학자금용자 신청부터 소득분위 심사를 위해
반드시 가구원 등의 등 소득분위 심사 절차 신청 필요

연체이자 도입

현행

연체 이자 없음

변경

연체 기간별 이자 차등 부과 **3% ~ 9%** ※ 2016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

신용유이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

현행

연체 10개월 이상 시 신용유이자로 등록

변경

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이자로 등록

※ 신용유이자 등록기준을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기준과 동일하게 변경
※ 변경된 기준은 2016년 1월 연체자부터 적용
(단 2010년, 2011년 대출약정자는 종전 등록기준 적용)